



“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KOREA RESOURCE-RECYCLING ENERGY MUTUAL-AID ASSOCIATION



수 신 전 조합원사 및 매립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대표이사 메일 송부 병행문서]

참 조 법·제도 담당

제 목 환경부 폐기물 소각·매립시설 신·증설 적극적 행정 지원 요청 문서
시행 알림

1. 한공조-414호[소각·매립시설 신·증설 추진 애로사항 제출요청, '19.10.2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방치폐기물 사태의 원활한 해결이 지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소각·매립시설 부족임을 환경부에 건의 하였으며,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불임과 같이 전국 지자체와 환경청에 업체들의 애로를 적극 지원하여 인·허가 지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인·허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 1부. 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



담 당 김 정 훈 팀 장 한 인 성 사무국장 장 기 석 부이사장 김 상 배 이 사 장 박 무 등

협조자

시행 한공조2019 - 490호 (2019. 12. 17) 접수

우 04508 서울시 중구 중림로 50-1(만리동1가, SKY1004빌딩) 13층 / www.krema.kr

전화 02-718-7900 전송 02-718-7171 / krema@krema.kr / 비공개



환경부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 소각·매립시설의 원활한 인·허가를 위한 협조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결과('19.10.16) 및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소각·매립시설 인·허가 지연 해소 건의('19.12.11)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에서는 불법 폐기물의 연내 처리 및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이행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나,
3.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 위임 근거도 없는데도 조례·지침 등을 시행하거나 민원해소 권고,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인·허가를 지연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 시·도(시·군·구) 및 지방환경청에서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기반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없이 인·허가를 지연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처분시설 인·허가 지연사례 및 협조사항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부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구광역시(자원순환과장), 대전광역시(자원순환과장), 광주광역시(자원순환과장), 울산광역시(자원순환과장), 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 강원도지사(환경과장), 충청남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물환경과장), 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과장), 한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낙동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금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영산강유역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대구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원주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서울특별시(자원순환과장), 인천광역시(자원순환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자원순환과장), 전북지방환경청장(환경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이준철	기술서기관	배문건	과장	전결 2019. 12. 12. 권병철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7968			접수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http://me.go.kr
전화번호	044-201-7366	팩스번호	044-201-7376	/ riverrest@me.go.kr	/ 부분공개(5)

「폐기물처분(소각·매립)시설 인·허가 지연사례 및 협조사항

(‘19.12.12,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1 검토배경

- 우리 부는 불법폐기물(방치·불법투기 등) 약 120만 톤 중 73.5만 톤 (61.1%, 1210)은 처리하고, 연내 90여만 톤 처리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 중임
- 이를 위해 폐기물처리용량 확대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적극 행정”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 ⇒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또는 민원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분시설 허가를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2 관련 사례

가.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지침으로 허가 제한

- (제도현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이 제출되면 허가권자는 시설·장비 등 「폐기물관리법」 등 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충족하면 허가 하여야 됨
- (문제점) 「폐기물관리법」상 위임 근거 없이 지자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됨
- 지자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를 조례로 제정 가능(지방자치법 제22조)
- ⇒ 일부 지자체는 법령에서 허가요건을 조례·지침을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가 없음에도 “조례·지침”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로 하여금 “정부합동 감사 시” 등 내용을 확인
토록 주문(‘19.10.15)

나. 민간업체 인·허가 애로사항 건의

- (인·허가 지연) 민간업체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등 인·허가 지연에 따른 어려움 해소 건의(19.12.11)
 - 민간(소각·매립)업체는 환경부와 “불법·방치폐기물 등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9.2.27)
 - “불법·방치폐기물 고통 분담 동참 및 우선 처리 결의”내용을 지자체 등에 통보한 바 있고(19.8.23)
 - 불법·방치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는 주민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先) 처리, 후정산 등을 협조·지원 중임
 - ⇒ 지자체 등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를 민원 타 지역 폐기물 반입 등의 사유로 “법령에 근거 없이” 지연

3 | 인·허가 협조사항

◆ 사업장폐기물 처리(총 발생량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처리시설 부족 등은 궁극적으로 “생산·산업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 등을 제정·시행하거나 민원 등의 사유로 소각·매립시설 허가를 제한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 법령에 근거 없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는 “조례·지침은 폐지”
 - ⇒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위배(국민권익위)
 - 민원해소 방안으로 행정소송을 유도하거나, 사업자 주도의 민원, 갈등 해소요구 보다 “민·관이 공동대응”하는 방안으로 개선
 - ⇒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협조 등은 신뢰성과 합리적 민원, 갈등 해소 계기로 작용